의안번호	2207246
의 뢰 인	최민희의원
회 답 일	2025.2.5.
추계번호	25D0587

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국민소환투표권)	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「공직선거법」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소환투표권이 있음	의무규정
2	안 제6조(국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국민소환투표 홍보·계도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소환투표권자가 국민소환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,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 하에 문서·도화·시설물·신문·방송 등의 방법으로 국민소환투표 참여·투표방법, 그 밖에 국민소환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·홍보를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8조(국민소환투표의 청구)	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「공직선거법」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“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”라 한다)은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28조(국민소환투표관리경비)	국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,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국민소환투표대상자가 국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함 1. 국민소환투표의 준비·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2. 국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, 토론회 등의 개최 및 불법 국민소환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3. 국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송과 관련된 경비 4. 국민소환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, 그 밖에 국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	의무규정
5	안 제32조(국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)	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죄 및 제40조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조(국민소환투표권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6조(국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국민소환투표 홍보·계도)	
3	안 제8조(국민소환투표의 청구)	
4	안 제28조(국민소환투표관리경비)	
5	안 제32조(국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)	

2. 상세 사유

❑ 국회의원 국민소환투표 실시(안 제4조 등)

○ 제정안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「대한민국헌법」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,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·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

○ 제정안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국민소환투표 실시에 따른 준비, 관리, 투·개표 절차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○ 다만, 현시점에서 국민소환투표 청구 및 실시 횟수,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될 대상자 수, 투표인의 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
- 참고로,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를 1회 실시하는 경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회 실시 비용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장 최근 실시한 전주시을국회의원 재선거 비용은 다음과 같음

[표] 전주시을국회의원 재선거 비용(2023.4.5.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예산액	이·전용등	집행액	불용액
선거관리일반	118	-	149	△31
선거운동관리	116	27	140	3
사전투표관리	229	55	274	11
투표관리	198	128	322	4
개표관리	99	21	114	6
계도홍보	80	1	81	-
위법행위 예방단속 (공정선거지원단,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등)	130	-	129	1
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조사	33	△3	20	10
인터넷선거보도심의	12	-	11	1
선거방송토론관리	32	-	32	-
정책선거	6	-	3	3
선거여론조사심의	15	-	13	2
당내경선	21	-	1	20
보전비용	305	3	308	-
합 계	1,394	233	1,597	30

자료: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강아름	김안나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아름	02-6788-4664	krm7839@nabo.go.kr